2022년 2분기 희망퇴직 시행

□ **시행 근거**: 2018**년 단체교섭 노사합의서 이행**(2018.05.25)

□ **신청 대상**: 6**개월 이상 정년 잔여직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**

○ **'22년 3분기 임금피크제 도래예정자** ('65.6월생~'65.8월생)

○ **중대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**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

- 산재승인 이력이 있거나 장애인 등록증 보유자
-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어 병원급 진단서 제출자

※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가능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

□ **주요 일정(안)**

구분	일정	내용
신청접수	6.7(화)~6.14(화)	• 시행문서 발송 및 전사 공지(6.7) • 접수방법: 부서별 인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- 단, 공상/장애는 증명서류* 및 신청사유 제출必 * 증명서류: 요양·보험급여결정통지서 or 장애인등록증 or 병원급 진단서
인사위원회 심의/확정	6.15(수)~6.20(월)	• **부서별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선발자 확정** (단, **공상/장애**에 대해서는 **중앙인사위원회 시행**) - 공상/장애는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유 심의
업무 인수인계	6.21(화)~6.24(금)	• 선발자 업무 인수인계 시행 • 퇴직서류 징구
퇴직발령	2022.7.1자	

※ 전직지원 교육은 정년퇴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퇴직 후 시행(희망자 限)

[참조] 희망퇴직자 처우

구분	내용
희망 퇴직금	• **보상기준**: **월기본급* × 산정 월 수 × 지급률** * 보수규정 제42조의 피크임금 기준의 월 기본급 적용 ▶ **산정 월 수** (최대 45개월) - 정년퇴직일 5년 이내는 잔여월수 매 2월당 1개월 - 5년 초과 10년까지는 잔여월수 매 4월당 1개월 (최대 45개월) ▶ **지급률(%)**: 100 + [55 - {(20 / 45) × 산정 월 수}]
비금전적 보상	• **감사선물**: 공로패, 여행상품권(150만원), 명예사원증 • **복지지원**: 유무선통신비 보조(1년간 최대 월 3만원), 동우회비 지원(22만원)